

내압용기 교체증명서

자동차 소유자	성명(명칭)
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주소
자동차	차명
	최초등록일
	등록번호

장착 위치	용 기						밸브 및 안전장치 번호		
	교체 전	교체 후					교체 전	교체 후	
	용기의 번호	제조사	제조 일련번호	제조 연월	내용적 (ℓ)	용기 형식	밸브(안전 장치)번호	모델명	일련 번호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 용기를 교체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자동차정비업자



	수수료
	없음

유의사항

- 자동차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 결과표에 내압용기 교체증명서를 첨부하여 「자동차관리법」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여야합니다.
- 용기형식은 CNG1, CNG2, CNG3, CNG4, LNG, CHG로 구분합니다.